

# 푸른저축은행 「퇴직연금 정기예금」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공됩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
## 1 | 상품 개요 및 특징

- 상 품 명 : 「퇴직연금 정기예금」
- 상품특징 :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예금 상품

## 2 | 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이며,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약관, 증서 등 계약서류에 표시됩니다.

구 분	내 용																	
가입대상	▷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금융회사(퇴직연금사업자)																	
가입금액	▷ DB형 : 30억원까지 ▷ DC형 및 IRP형 : 5천만원까지																	
계약기간	▷ 퇴직연금 정기예금 : 3개월, 6개월, 1년, 2년																	
예금자 보호여부	DC / IRP	<b>해당</b> 	<p>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<u>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"최고 5천만원"</u>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단,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.</p> <p>※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보호됨</p>															
	DB		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															
적용이율 등 (세금납부 전)	<p>▷ 기본이자율은 신규가입일(또는 재예치일)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 적용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3개월</th> <th>6개월</th> <th>12개월</th> <th>24개월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DB형</td> <td>3.9%</td> <td>4.5%</td> <td>4.8%</td> <td>4.8%</td> </tr> <tr> <td>DC/IRP형</td> <td>3.5%</td> <td>4.1%</td> <td>4.4%</td> <td>4.4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구분	3개월	6개월	12개월	24개월	DB형	3.9%	4.5%	4.8%	4.8%	DC/IRP형	3.5%	4.1%	4.4%	4.4%
구분	3개월	6개월	12개월	24개월														
DB형	3.9%	4.5%	4.8%	4.8%														
DC/IRP형	3.5%	4.1%	4.4%	4.4%														

<b>이자계산방법</b>	▷ 원금×{(1+이율/12) <sup>n</sup> -1} (*n은 경과월수)					
<b>이자지급방법</b>	▷ 만기일시지급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 지급					
<b>일반중도해지 이자율</b>	▷ 신규/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퇴직연금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 적용					
	구 분	1개월 미만	1개월 이상~3개월 미만	3개월 이상~6개월 미만	6개월 이상~12개월 미만	12개월 이상
	DB형	0.20%	1.95%	2.45%	2.53%	2.55%
	DC/IRP형	0.20%	1.75%	2.25%	2.33%	2.35%
<b>특별중도해지 사유</b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</li> <li>2.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,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,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</li> <li>3.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</li> <li>4.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</li> <li>5. 수탁자의 사임</li> <li>6.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</li> <li>7.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</li> <li>8.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</li> <li>9. 수수료의 징수</li> <li>10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 방법의 변경·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</li> </ol>					
<b>특별중도해지 이자율</b>	<p>▷ 신규일(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)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. 이때 약정이율이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의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의미함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예치기간 6개월미만 :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</li> <li>2. 예치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: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</li> <li>3. 예치기간 1년이상 2년미만 :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</li> </ol> <p>※ 단, 특별중도해지 사유 제9호 및 제10호에 의한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 적용</p>					
<b>만기처리방법</b>	<p>▷ 확정급여형(DB) 퇴직연금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</p> <p>▷ 확정기여형(DC), 기업형/개인형(IRP) 퇴직연금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되고, 동 원금과 이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대기기간 동안 저축은행에서 운용 후 상환. (다만,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 이전까지는 재예치 됨)</li> <li>2.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</li> </ol>					

만기 후 이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확정급여형(DB)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</li> <li>▷ 확정기여형(DC), 기업형/개인형(IRP)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대기기간 시작일의 특별증도해지이율 적용</li> </ul>
예금 해지 시 불이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만기 전 예금해지 시 <b>중도해지이자율</b> 적용</li> </ul>
분할 지급 (일부 지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이 예금은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하며, 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단,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</li> <li>2.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</li> <li>3.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인출</li> <li>4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를 위한 인출</li> </ul> </li> </ul>
계약의 해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퇴직연금 운용관리 금융회사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한국예탁 결제원 시스템의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</li> </ul>
제한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계좌에 <b>압류, 가압류</b>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</li> <li>▷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<b>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, 지급정지, 상계 등은 불가</b></li> <li>▷ 이 예금은 <b>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음</b></li> </ul>

### 3 | 유의 사항
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,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이 예금은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, 해당시점의 고시금리가 적용됩니다.
- 판매사가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,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,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,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,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법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(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) 금융상품 명칭, 법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요구서를 포함한 서면등을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.

상품가입 후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**푸른저축은행 고객센터(02-545-9000)** 또는 **인터넷 홈페이지(www.prsb.co.kr)**에 문의할 수 있고,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. 또한 당 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**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**에 분쟁조정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#### ● 금융용어 설명

용 어	내 용
압류	국가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,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
가압류	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
질권설정	자기 또는 제삼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,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
경과기간	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 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

※ 출처 :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, 금융감독원 알기쉬운 금융용어